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]

- 점검일시 : 2021.12.02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상종,이태형

### 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벽천 및 워터테이블 구조물 작업구간은 아래 사항을 보완 조치 요망①구조물 상부는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대착용 및 안전난간 설치 필요②구조물 벽체 작업 및 상부 작업에 사용되는 이동통로는 상시 설치되는 구조로 설치 권고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제32조(보호구의 지급), 제 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된 인양박스는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아 탈락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작 및 사용 금지 하도록 현장 관리 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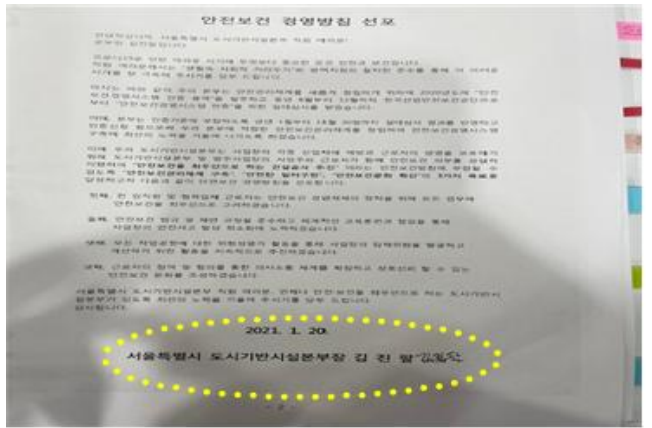


○ 안전보건경영체계(방재시설부)

-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보완 요망  
 ① 위험성평가는 2주 간격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토목 및 조경 공종은 11월 15일 이후 미시행 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할 것  
 ②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내용이 미흡하게 수립되어 있으므로 보완 필요  
 ③ 금일 현장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은 위험들이 다수 발생하였음. 주요 위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요망  
 ※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 (위험성평가)

○ 안전보건경영체계(방재시설부)

-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방침 및 목표는 현 본부장 선포사항으로 변경 요망  
 -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 확인서는 본부 목표 추진현황을 추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양식 수정 요망  
 ※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 (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게시)



○ 안전보건경영체계(방재시설부)

- 안전보건경영체계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감리단, 시공사, 하도급사는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하고, 맡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도록 건설사업관리단의 지도 및 모니터링 요망

※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 (조직구성원의 업무 분장)



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구조물 배면(사면) 및 굴착사면은 균열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일부 토사가 무너진 부분 또한 관찰되니, 겨울철 동결융해로 인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질 특성에 맞는 사면기울기를 형성하거나, 적절한 사면안정 조치를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(토석붕괴 위험 방지),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굴착사면에 정리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용 유무 파악 등 사용되고 있는 지하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(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물질은 관련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여 작업 전 위험물 유해요인을 근로자가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바람.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04 (위험물 보관소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비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추락,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고소 작업에는 비계 또는 말비계 등 작업환경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바람,

-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안전화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고 있어 못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찢리거나 중량물에 발등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근로자에게는 안전장구(안전화)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안전교육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마대는 파손되거나 측면이 터진 마대를 사용하고 있어 양중 시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, 항공마대는 양중고리가 마대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마대를 사용바라며,

- 하수관은 모래마대로 구름멈춤대를 설치하는 등 중량물 고임상태가 미흡하니 경사면이나 외력에 동요나 이동하지 않도록 목재 췌기 등 견고한 물체로 구름멈춤대를 설치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)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26 (항공마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띠굴착 현장은 굴착단부에 다단으로 거푸집을 적치한 상태에서 굴착하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으로 다단으로 적치한 자재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단부에는 자재 적치를 지양하고,

- PE물탱크 또한 불안정한 상태로 쌓은 팔레트 위에 위치해 외력에 쉽게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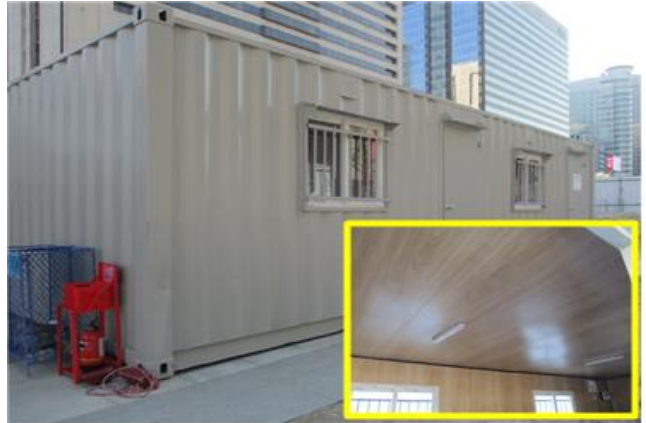


우려가 있으니 보완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품질시험실은 천정형 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 바람.

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에어컴프레샤에 있는 회전체는 덮개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어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에 노출 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 요망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(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)



○ 안전보건경영체계(토목부)

- 위험성평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보완 요망  
 ① 위험성평가는 2주간격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토목 및 조경 공종은 11월 15일 이후 미시행되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리할 것  
 ②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내용이 미흡하게 수립되어 있으므로 보완 필요  
 ③ 금일 현장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은 위험들이 다수 발생하였음. 주요 위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요망  
 ※ 현장 안전보건경영매뉴얼(위험성평가)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(건축부)

- 가설비계 안전난간은 상부 안전난간 또는 중간 난간만 설치된 곳이 다수 있으니, 추후 비계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작업을 진행 바람.

- 비계 출입통제 시설을 코로나 안내간판으로 설치하는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통제가 미흡하니, 출입통제 구역은 근로자가 쉽게 통제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 타포린 및 안전시설을 설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(건축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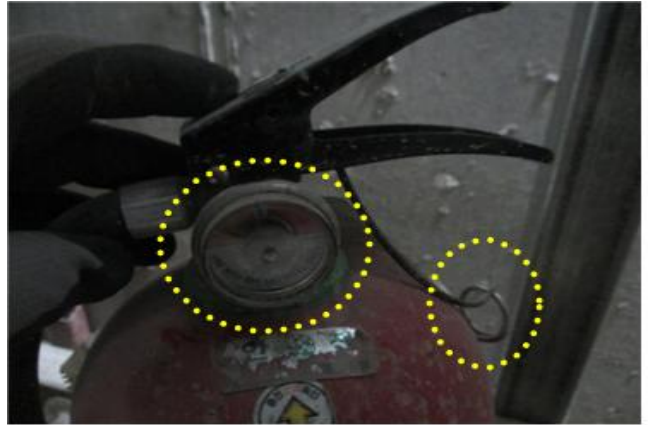
- 고속절단기, 용접작업 등 불티에 의한 화재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소화시설(소화기)을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조치 하도록 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바람,

-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일부 안전핀이 뽑혀 있거나, 압력게이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



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바람.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p155 (고속절단기), p99(임시소방시설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(건축부)

- 해치광장 작업장 입구에 설치 된 철판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 위험이 있음.이동통로 보완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